

지역간 연계 · 협력사업
지역과 연계 · 협력사업
토한 상새발전
올바른 사업추진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지역발전전략 즉, “지역발전전략은 다른 어떤 지역발전전략과도 다른 다른 지역발전전략을 명칭, 목표, 수단, 내용, 추진방식, 추진주체, 추진절차, 추진시기, 추진예산, 추진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지역발전전략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지역발전전략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협상을 통해 자원, 기술, 인력, 자본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지역발전전략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으로 추진한다. 지역발전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권역간 연계·협력도 포함한다. 지역발전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고령화·저성장 시대에는 지역발전사업의 추진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사업, 사업(시설)의 융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발전사업, 불적 사업역량을 보완하고 한정된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복투자자와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분산투자 로 인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결합생산을 통하여 투입 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를 공동 생산함으로써 사업규모와 자원역량을 중대시키고 임계수요(criticalthreshold)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해야 한다.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계획수립이 줄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계획수립 단계 이전에 연중 상시적인 사업발굴체계가 필요하며, 매년 사업의 발굴, 협의·조정, 합의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화를 성사시키는 상시적 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상시적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위원회와 광역위원회는 지역별 협력대상자원 및 협력대상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동기를 유발하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잠재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이 발굴되면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간에 예비회의 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협력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한 경우 주요 합의사항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협력협약(MOU)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주민들의 생활패턴은 광역화된 지가 오래이며, 지역 그리고 국가간 경제 및 교류활동의 범위도 행정구역을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은 현 정부의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발전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권은 그 중 하나의 광역경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과 시·도간 연계 협력 추진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9년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내 교수·경제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는 60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싱크탱크(think tank)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공동의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주요 발전자원을 도